

의 안 번 호	제 554 호
의 결 연 월 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
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상정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0년 10월 5일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상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10월 5일

발 의 자 : 이상정, 연종석, 송미애,
윤남진, 이상식, 박형용,
이숙애 의원

1. 제안이유

-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운용기금 부족으로 적립기금을 사용 하도록 하며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)
- 운용기금 재원을 적립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농업기술원장에서 기술지원국장으로 변경(안 제5조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80일 이내로 변경(안 제14조)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0. 9. 15. ~ 2020. 9. 25.(10일간)
- 관련부서 협의 :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와 협의함
-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2020년”을 “2025년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운용기금의 결산잔액

제4조제2항 중 제1호를 제2호로, 제2호를 제3호로, 제3호를 제4호로,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적립기금 다만, 단체별 총 적립금의 3%이내

제5조제2항 중 “15인”을 “14명”으로 하고, “농업기술원장”을 “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,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, 유기농산과장

제10조의 제목 “(기금의 구분관리)”를 “(기금의 관리)”로 하고,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농업기술원장”을 “기술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3월”를 “80일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) ① (생략)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0년</u>까지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.	제3조(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2025년</u>----- ----- -----.
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(생략) 2. <u>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제10조제2항의 수익금</u>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u>〈신설〉</u> 1.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. 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3. 전년도 운용기금 이월금 4. 기타 지원금	제4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운용기금의 결산잔액</u> ② ----- -----. 1. <u>적립기금 다만, 단체별 총 적립금의 3%이내</u> 2. (현행 1호와 같음) 3. (현행 2호와 같음) 4. (현행 3호와 같음) 5. (현행 4호와 같음)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15인</u>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<u>농업기술원장</u>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 한다.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생략 ② ----- <u>14명</u>----- ----- --- <u>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</u> --- ----- -----. ③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1. <u>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, 지원기획과장,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, 유기농산과장</u> 2. (생략) ④ (생략)	1. <u>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,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, 유기농산과장</u> 2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기금의 구분관리)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② <u>적립기금 증식을 위하여 당해 연도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의 10%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.</u>	제10조(기금의 관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(삭 제)
제13조(회계관리) ① (생략) ② 기금운용관은 <u>농업기술원장</u>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지원기획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. ③ ~④ (생략)	제13조(회계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기술지원국장</u> -----. ③ ~④ (현행과 같음)
제14조(기금결산) ① 농업기술원장은 출납폐쇄 후 <u>3월</u>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,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~ ③ (생략)	제14조(기금결산) ① ----- ----- <u>80일</u> ----- -----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<u>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	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--- 「<u>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-----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